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70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문금주
김원이 · 차지호 · 임미애
조인철 · 박용갑 · 이춘석
조계원 · 허영 · 이용선
정준호 · 김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허가·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u><신설></u>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부터 <u>제9호까지</u> 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 <u>제10호까지</u>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